

성남 금토지구 중흥S-클래스

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문

■ 특별공급(신혼부부) 사전당첨자 자격검증 제출 서류(계약체결 전 제출)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무주택약서	본인	■ 당사 지정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
	○		주민등록표 등본(전체포함)	본인	■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 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■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 초본(전체포함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로 발급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■ 용도 : 아파트 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■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-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■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■ 혼인신고일 확인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사전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사전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 서류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인증서류) [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
		○	주민등록표 등본(전체포함)	자녀	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임신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■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당사 지정장소에 비치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■ 입양의 경우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■ 당사 지정장소에 비치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		○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■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■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등기열람/발급)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■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*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- 토지 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- 공동주택/단독주택 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공동주택가격 열람/단독주택가격 열람 - 기타 건축물 : 위택스 - 지방세정보 - 시가표준액 조회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증빙서류	본인	■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■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■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명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취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■ 어떤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취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	○	주민등록표 등본	본인 및 직계존속	■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주민등록표 초본	직계존속	■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.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	■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. ■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.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○	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 주택	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■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■ 소형차기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■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■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■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■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■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■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원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(※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,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, "주소변동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: 세대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
 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
성남 금토지구 중흥S-클래스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

■ 특별공급(신혼부부) 사전당첨자 소득 증빙 제출 서류(계약체결 전 제출)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: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"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"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)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- 해당 직장 - 해당 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 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(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)	-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: 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	-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자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-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	-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국민연금 보험료 및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(원본) 제출	- 세무서 - 국민연금관리공단
	신규사업자	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- 국민연금관리공단 -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사본	- 세무서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재직(위촉)증명서(직인날인)	- 세무서 -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자급명세서(직인날인) 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자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- 해당직장 -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(접수처에 비치)※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(신고 소득사실 없음)	- 접수장소	
자산입증서류	-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9조의2 및 「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"부동산 소유 현황"(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),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(*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회원가입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		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 ※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: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 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 ※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